

13. 문화예술진흥기금

1. 기금개요

설치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치년도	1973년	운용개시년도	1973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재원구조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한다는 기금목적이 유효함.

3. 존치평가 총평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재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에서 기금의 세부적인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세부사업은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등이다.

- 본 기금의 세부사업들의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제18조의 세부사항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을 민간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목적은 아직도 유효하며 타기금과의 유사중복성도 없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개별사업의 적정성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이 주요 단위사업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음. 세부사업은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해당 세부사업들의 설치근거는 동법 제18조의 세부사항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세부사업인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등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임무와 연결되는 내용임.
- 민간분야는 사적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을 민간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됨. 특별히 시장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순수기초예술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세부사업들인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등의 사업들은 다른 예산사업과의 중복성이 없으며, 타기금과의 중복성도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세부사업은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등임.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문화 예술 대부분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가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그 공공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또한 모든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임무와 직결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타 기금과의 유사 · 중복성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